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99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3. 9.

복지문화 위원회
전문 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3. 9.

복지문화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보건행정과장)
- 발의일자: 2023. 9. 1.(금)
- 회부일자: 2023. 9. 1.(금)
- 검토기간: 2023. 9. 4.(월) ~ 9. 8.(금)

2. 제안이유

-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정신건강수준이 악화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 지지 체계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인 「달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3. 12.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상시설

| 시설명 | 소재지 | 규모 (면적,㎡) | 운영법인 | 비고 |
|-------------|-----------------------------|--|--------|-----------|
| 달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 월성로 77(월성동) (달서건강복지관 3층) | 시설규모: 450.97㎡ 주요시설: 운영실, 프로그램실, 취미 문화실, 멀티미디어실 | 대구정신병원 | 인원 18명 |

※ 운영비(운영지원 및 인건비): 725,020천원(국비:시비:구비, 5:2.5:2.5)

※ 사업비(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등): 474,940천원(국비·기금:시비:구비, 5:2.5:2.5)

나. 위탁개요

○ 위탁내용

-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중증정신질환 관리사업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 위탁기간: 위탁개시일로부터 3년(2024. 1. 1.~2026. 12. 31)

○ 수탁자 선정방식: 기존 수탁업체 적격심사 후 재계약

※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적격심사 후 75점 미만일 경우 공개모집

4. 관련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제7조까지
-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등에 기여하는 달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일(2023년 12월 31일)이 도래함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계약을 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에 따라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등에 요구되는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최근 3년간 위탁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성과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18개 항목 중 6개 분야에서 만점을 받고, 총점 92.3점으로 전반적으로 운영성과가 탁월하며
-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적격심사를 거쳐 75점 이상일 경우 현 수탁기관과 계약하고, 75점 미만일 경우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수탁기관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새로이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의 전문성과 필요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충분하고,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수탁기관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④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명세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②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재계약 시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 또는 감사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고 한다)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판단되는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탁할 때에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